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초대형 산불 발생('25.3월)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필요
- 나.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 필요

3. 주요내용

- 가.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(안 별표3 개정)
- 나.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화(안 제2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41조	산림투자선도지구
--	--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) ① ~ ⑥ (생 략)	제29조(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) ① ~ ⑥ (현행과 같 음)
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“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 다.	⑦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삭 제	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 터(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 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는 1만제곱미터)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 물을 이용한 <u>유기질비료</u> 제조 시설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기질비료 제조시 설 · 부숙유기질비료</u> ----- --
4의2. ~ 10. (생 략)	4의2. ~ 10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9, 1740